

# 씨드큐브 창동 임차인 모집공고(정정)

6P

(정정 전)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정정 후)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번지

■ 공급대상 : 전용 59m<sup>2</sup>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92세대(특별공급 200세대, 일반공급 592세대)

■ 임대사업자(사업주체) : 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DL E&C(주), (주)태영건설, 한신공영(주)

## ■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씨드큐브 창동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엣지 또는 크롬을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로 이뤄지며, 공급계약 체결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 씨드큐브창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담전화(☎02-6437-3800)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 및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10년 이상을 임대운영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법률 개정('20.08.18.) 경과규정에 따라 8년이 적용 됨]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전유부 관리, 임대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주)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3.04.20.(목)]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연령,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혼인여부,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04.20.(목)]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및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04.20.(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최초 계약서의 자격 요건을 적용 및 확인하며, 이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은 [2023.04.20.(목)]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http://www.seedcubechangdong.com)),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http://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www.seoulreits.co.kr](http://www.seoulreit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592세대)은 총 세대(792세대)에서 특별공급(200세대) 세대를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체결 후 계약자 명의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법령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변경일은 계약자의 한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봉구 주택과-7868호(2023.04.19.)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번지

■ 공급규모 : 오피스텔 지하 7층 ~ 지상 최고 49층 1개동 총 792세대[특별공급 200세대 포함] 및 커뮤니티시설

■ 공급대상

(면적 단위 : m<sup>2</sup>, 세대수 단위 : 세대)

주택형 (타입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m <sup>2</sup> ) (기계실 등)	계약면적(m <sup>2</sup> )	특별공급(청년)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합계	입주 지정기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5AT	25.59	18.21	43.80	19.14	62.94	83	-	83	2023.08 (예정)
26AT, 26A	26.77	17.40	44.18	20.03	64.20	34	298	332	
26BT	26.69	17.17	43.86	19.97	63.83	83	-	83	
29A	29.90	19.43	49.33	22.37	71.70	-	168	168	
29B	29.28	20.57	49.84	21.90	71.75	-	15	15	
29C	29.49	19.62	49.11	22.06	71.17	-	42	42	
59A	59.35	40.35	99.70	44.40	144.09	-	69	69	
<b>합 계</b>						<b>200</b>	<b>592</b>	<b>792</b>	

- 청약에 적용되는 타입명은 건축허가도서 및 준공도서에 표시된 타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방식인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면적(m<sup>2</sup>) × 0.3025 또는 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은 주택공급면적을 제외한 지상,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버림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층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형별 표기안내

공고상 전용면적(m <sup>2</sup> )	25.59m <sup>2</sup>	26.77m <sup>2</sup>		26.69m <sup>2</sup>	29.90m <sup>2</sup>	29.28m <sup>2</sup>	29.49m <sup>2</sup>	59.35m <sup>2</sup>
공급유형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타입표기 방식	25AT	26AT	26A	26BT	29A	29B	29C	59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홈페이지, 임대공급홍보관, 공급안내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사업자 임대운영기간은 10년이며, 임대운영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세대수 단위 : 세대, 금액 단위 : 원)

타입	공급유형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저층 (7~20층)	중층 (21~35층)	고층 (36~49층)
				계약 시	입주지정일			
25AT	특별공급	83	20,000,000	2,000,000	18,000,000	405,000	427,000	453,000
26AT	특별공급	34	20,000,000	2,000,000	18,000,000	427,000	453,000	479,000
26A	일반공급	298	20,000,000	2,000,000	18,000,000	613,000	648,000	683,000
26BT	특별공급	83	20,000,000	2,000,000	18,000,000	424,000	450,000	476,000
29A	일반공급	168	30,000,000	3,000,000	27,000,000	650,000	686,000	725,000
29B	일반공급	15	30,000,000	3,000,000	27,000,000	633,000	668,000	707,000
29C	일반공급	42	30,000,000	3,000,000	27,000,000	637,000	677,000	716,000
59A	일반공급	69	200,000,000	20,000,000	180,000,000	668,000	747,000	826,000

-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납부하셔야 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입주지정일에 잔금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의 90%를 납부하셔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층·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 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83명 (25AT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청년)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li> <li>-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li> <li>-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li> </ul> </li> <li>※ 지역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직장소재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직장소재지일 경우 재직 증명서상 소재</li> </ul> </li> <li>- 1순위: 도봉구 거주</li> <li>- 2순위: 동북3구(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거주</li> <li>- 3순위: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및 의정부시 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2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3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선정 시에도 위의 순위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li> <li>• 예비당첨자의 호수 배정 예비당첨자의 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미계약 세대, 계약해지 세대, 퇴거 세대 등이 2개 세대 이상 발생되어 예비당첨자에게 임차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li> </ul>
	34명 (26AT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목)] 기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이면서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li> <li>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li> <li>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li> <li>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ol> </li> </ul> </li> </ul>	
	83명 (26BT형)		

- 청년의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모두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약약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시 준공 전, 입주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25AT, 26AT, 26BT 타입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층은 저층 · 중층 · 고층은 지정할 수 없고 전체층 내에서 추첨에 따라 배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특별공급(청년) 소득 기준 산정

(금액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10% 이하	3,689,272	5,505,914	7,390,018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 이하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일반공급으로의 전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2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http://www.seedcubechangdong.com)),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http://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www.seoulreits.co.kr](http://www.seoulreits.co.kr))에서 별도 공고합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선발인원	자격요건
일반공급	298명 (26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목)]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li> <li>※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li> <li>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불가)</li> <li>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 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li> <li>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청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li> </ul>
	168명 (29A형)	
	15명 (29B형)	
	42명 (29C형)	
	69명 (59A형)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li> </ul>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2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li> <li>전산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호수 배정(미계약세대 등이 2개 세대 이상 발생 시)은 임대사업자가 별도 추첨을 실시합니다.</li> <li>예비당첨자 명단은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www.seoulreits.co.kr)을 통해서도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약속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시 준공 전, 입주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기간 내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은 반드시 타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층은 저층 · 중층 · 고층은 지정할 수 없고 전체층 내에서 추첨에 따라 배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IV 공급일정

###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2023. 04. 24. (월) ~ 2023. 04. 28. (금)	당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www.seedcubechangdong.com)	없음	2023. 05. 02. (화) 15:00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www.seoulreits.co.kr)
일반공급	해당 기간 중 10:00 ~ 17:30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구비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을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명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3.05.03.(수) ~ 2023.05.19.(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불가)	등기우편 : 원본제출,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12, 6층 (2023.05.1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3.05.22.(월) ~ 2023.05.27.(토) (24시간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가능)	임대공급홍보관 :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12, 6층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모두싸인 전자계약 시스템 문자발송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 안에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제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중복되는 기존 주택을 명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 될 수 없습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홍보관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 [2023.05.22.(월)] ~ [2023.05.27.(토)] 내 당첨자 연락처로 모두 싸인 전자계약 시스템 발송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당사 홍보관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당첨자분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계약 체결일 [2023.05.22.(월)] ~ [2023.05.27.(토)] (10:00 ~ 17:00)에 당사 홍보관(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12, 6층)으로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오피스텔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7. 계약금 입금증(입금확인증)	본인	• 계약장소에서 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증, 이체확인서
		○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청년)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임대공급홍보관 비치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4.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5.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부모)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6.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임대공급홍보관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제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4.20.(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오피스텔 임대계약용)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청년)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임대공급홍보관 비치)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계약금)	우리은행	추후공지	(주)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보증금(잔금)			

- 글자수 표기 제한으로 예금주명이 상기 명칭과 다르거나 글자수가 제한되어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호수 및 성함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902호 홍길동)
- 계약금, 잔금은 세대별 계좌로 수납할 예정이며, **계좌번호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하오니 입금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임대공급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 또는 실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월 임대료 납부계좌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계약자에 한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월 임대료는 지정된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VI 유의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점검) 예정기간은 계약자에 한해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더라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에 계약행정센터에서 보증금 잔금 지불 및 입주증 발급을 한 뒤 열쇠불출 후 세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계약행정센터는 입주지정기간 중 09:30부터 17:00까지 운영하므로 해당 시간 이외에는 입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에치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입주 전에 별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 이사일 예약에 관한 일정 및 내용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사일 예약은 당 임대주택 792세대 전부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사일에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차량의 진입, 주차 및 엘리베이터의 사용에 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이사하는 세대수를 제한하므로 예약한 이사일 이외의 날짜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및 입주가 불가 하오니 필히 예약된 이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일 미준수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임대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미계약 세대, 계약해지 세대 등으로 인한 최초 당첨자 이외의 추가당첨자의 경우 계약 시점에 따라 이사일 예약을 원하시는 일정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약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이면서 동법 제4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3항 제3호 조항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이후 법정 기한 내 도봉구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임대보증금 보증 안내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의 사업주체를 보증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등

- 보증약관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된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된 보증기관의 보증약관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계약은 사업주체와 체결합니다.
- 이 주택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 건축물의 일부로서 사업주체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공급하는 형태입니다.

- 사업주체는 건축준공 후 이 주택을 취득시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의거 사업주체의 자산보관기관인 (주)우리은행에 신탁됩니다.
- 이 주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울창동도시개발사업구역내 부지에 신축되는 복합시설 건축물의 일부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준공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축 건축물의 특성상 건축준공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은 불일치 할 수 있고 이 기간(입주지정기간 포함) 중 임대보증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입주 및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사업의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별도의 용자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량이 많아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사오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임차인 모집 홈페이지(www.seedcubechangdong.com)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는 모집공고 상의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관리주체 등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의 잔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보증금의 잔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제공된 세대 내 쿡탑, 세탁기, 냉장고(59A형은 제외), 에어컨 등을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최초 입주 시 제공되는 시설물인수를 거부하거나 관리주체에 보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오백만원한도)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설계 · 시공 상 유의사항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의 스펙, 색상, 내용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등기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복합시설 내 조경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합시설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및 동일지역의 타 시공사 및 동일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시공상의 하자 관련 사항은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에 접수하면 하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하자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하자책임기간동안에 한하여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컨소시엄에서 하자보수를 진행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관리업체와 시공사 협의하여 현장지정) 동안 사용하며, 시공사 및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천정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주방, 욕실 등)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 배관점검을 위해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은 오피스텔 공용시설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복합시설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복합시설 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라 옥상출입문은 평상시 잠김상태이며,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평상시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령 등에 의거하여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홀, 계단 및 비상용엘리베이터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복합시설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건축물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복합시설 연면적(추가)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고층 건물로(49층) 내, 외부의 기압차등에 의하여 일부 소음이나 도어 여닫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오피스텔 외부 환경

-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외부의 건물 신축, 오피스텔 외 차량통행 및 창동역 지상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복합시설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4면이 도로로 인접되어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술작품, 복합시설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층 주동 출입구와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D/A, 쓰레기보관소, 에어컨실외기, 각종설비 등으로 인한 악취,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항공장애등, 경관 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주차 위치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 차량 주행 및 도보 이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시설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동동선 거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 출입문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및 오피스텔 차량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및 오피스텔 공동현관 출입구(지하주차장, 지상층 ELEV홀 전층) 등에 설치되어 있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복합시설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항공장애등, 전기선로, 통신선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상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자동차등록증,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는 노출 천정으로 시설물(배관/케이블/장비/트레이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복합시설 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복합시설 및 오피스텔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고 지하 PIT층에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문화+집회시설, 서울시 공영주차장이 층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주차관제 설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계약 전 복합시설 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오피스텔 남측세대 측벽(BIPV)과 옥상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건축물 전체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존 계획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인승/하중/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내 전파 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안테나/중계설비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일부 세대는 이동통신 등의 전파가 약하게 수신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사업내용이므로 입주 시 복합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관련 제공사항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등의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에는 군 작전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출입이 불가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혼선을 방지하고자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의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오피스텔 단위세대

- 각 세대의 기본 천장고는 7층~20층은 2.48m, 21층~49층은 2.3m로 시공되며,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실의 천장 마감, 커텐박스 등의 설치에 따라 일부 부분은 기본 천장고와 상이한 높이로 시공됩니다.(욕실의 천장고는 2.2m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건조기, 전자렌지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냉장고, 건조기, 전자렌지 등은 가구, 배치공간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 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및 배관이 주방가구 내부에서 일부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및 전기계량기(에어컨 전력량 제외)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전기 사용량은 별도 검침은 하나, 세대 월패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실내기, 환기 디퓨저,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 및 냉매 매립 배관은 천장 속에 설치되며, 응축수 배관이 세대내 화장실에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보강되지 않은 면의 기타 시설물 설치 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전열 환기시스템용 기계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샤워부스부위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제어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스펙,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 들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 환기시스템용 필터는 소모품으로써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교체 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 수량(전열교환기 내부설치분) 외 필터는 소모품으로 입주자(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세대 내 거실 및 외부와 면하는 창이 있는 곳 등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임대 시 세대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월패드, 배선기구,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현장 시공을 참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에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인조대리석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장물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 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등수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이 문 개폐 시 욕실화가 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출입키(카드형)와 현관문키(고리형)가 지급되며 지급개수의 제한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기기의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실내 벽체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7층~10층 복도 동측면에 피난용 구조대(수직강하식 층당 2개소)가 설치되며, 구조대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는 변경, 증설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라디오폰은 벽부형 통합콘센트에 연결되며, 해당 기기의 전원 및 통신선은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냉장고, 라디오폰, 온수분배기는 대기전력콘센트에 연결되며, 상시모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사 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남측면(1호~7호)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방은 고정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세대내 벽체에 고정하는 벽걸이 TV는 지정된 위치에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벽걸이 TV 지정위치 안내도 추후 공지)

## ■ 공용시설 관련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 건축물로서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복합시설 특성상 층·호수별 위치에 따라 인접 건축물 외각과 각종 시설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복합시설 특성상 비주거시설 설비구조 및 운영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야간조명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이용 동선이 타 시설 방문객 동선과 중첩될 수 있고 타 시설의 다중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인승·속도·탑승위치, 수전용량, 전기설 장비배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합시설 및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옥상 및 주변부에 실외기 설치 구획이 확보되어 있어 추후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일부 실외기가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2층, 3층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타 구분소유물로서 이 오피스텔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용 문의는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커뮤니티 시설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한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운영 프로그램과 개설되는 시점은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주차구획의 높이는 2.1m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충전공간이 급속 2개소, 완속 4개소(지하 6층 오피스텔 주차장 구간)로 계획되어 전기차 보유 차량대수에 따라 충전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불가 합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차는 지하5층 일부와 지하6층 및 지하7층을 사용하고, 주차가능대수는 장애인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하여 총 423대입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고 유희 주차장면은 외부개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와 발생 수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유상이용으로 운영되며 주차등록 및 금액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포함)	비고
건축감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6,714,840,000원	-
소방/통신감리			
전기감리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임대사업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110111-6855691)	디엘이앤씨 주식회사(110111-7736808), 주식회사 태영건설(110111-0155451), 한신공영 주식회사(110111-0075683)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110111-6106234)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0023393)

■ 공급오피스텔 및 임대공급홍보관 위치도



- 공급오피스텔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8번지
- 입주지원센터 : 추후 공지
- A/S 센터 : 추후 공지
- ※ 각 센터는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공급홍보관(계약체결 및 임대관리) :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12 , 6층(10:00~17:00)
- 홈페이지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seedcubechangdong.com](http://www.seedcubechangdong.com)) (옛지, 크롬 사용必)
- 임대공급홍보관 대표전화 : 02-6437-3800
- ※ 임대공급홍보관은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배치표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커뮤니티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101	4102	4103	4104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3915	3916	3917	3918	3919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	3709	3710	3711	3712	3713	3714	3715	3716	3717	3718	3719
3601	3602	3603	3604	3605	3606	3607	3608	3609	3610	3611	3612	3613	3614	3615	3616	3617	3618	3619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3508	350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216	3217	3218	3219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3111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3119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피난안전구역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커뮤니티 (6F)																		
상업시설 (B1F-5F)																		
지하주차장 (B2F-87F)																		

25AT 83호실 26A/AT 332호실 26BT 83호실 29A 168호실 29B 15호실 29C 42호실 59A 69호실 오피스텔 792호실

□ 특별규격(상하)